

高麗法學 게재 논문 심사규칙 [규정 명칭 변경 2020.9.1.]

2009. 4. 1. 제정
2011. 9. 20. 개정
2013. 12. 19. 개정
2016. 6. 9. 개정
2020. 9. 1. 개정
2021. 8. 16. 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『高麗法學』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9. 1.>

제2조 (논문게재와 편집)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논문의 게재여부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.

제3조 (논문심사의뢰)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논문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편집위원이 추천하는 자 가운데 논문마다 각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
②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논문의 분야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분야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3인 미만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9. 1.>

③ 기념 강연 등의 목적으로 편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 및 제출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④ 게재신청논문의 집필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비밀로 한다. 다만 편집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0. 9. 1.>

⑤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. <신설 2016. 6. 9>

⑥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9. 1.>

⑦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서를 제출할 때 ‘高麗法學 논문 심사위원 서약서(高麗法學 연구윤리지침 [별첨 2])’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연구윤리서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‘高麗法學 논문 심사위원 서약서(高麗法學 연구윤리지침 [별첨 2])’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1. 8. 16.>

제4조 (심사기준 및 방법)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투고논문의 심사를 실시한다.

1.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
2. 연구내용의 독창성
3.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
4.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

5. 연구결과의 기여도 <개정 2020. 9. 1.>

② 심사위원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되, 각 항목별로 ‘매우우수 (20점)’, ‘우수 (17점)’, ‘보통 (14점)’, ‘미흡 (11점)’, ‘매우미흡 (8점)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. <개정 2020. 9. 1.>

③ 심사위원은 전항에서 평가한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고,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심사결과를 최종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.

1. 게재가능 (100-80점)
2. 게재가능(수정후바로) (79-70점)
3. 수정 후 재심 (69-60점)
4. 게재불가 (59점 이하)

<신설 2020. 9. 1.>

평가		매우우수 (20점)	우수 (17점)	보통 (14점)	미흡 (11점)	매우미흡 (8점)
항목						
1.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						
2. 연구내용의 독창성						
3.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						
4.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						
5. 연구결과의 기여도						
총 점 (100점 만점)						
최종판정	게재가능 (100-80점)	게재가능(수정후바로) (79-70점)		수정 후 재심 (69-60점)	게재불가 (59점 이하)	

④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 양식([별첨 1])에 따라 심사의견을 작성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심사평가서를 제출한다. <신설 2020. 9. 1.>

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가 ‘수정 후 재심’ 또는 ‘게재불가’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평가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9. 1.>

⑥ 제3항의 기준에 의해 동일한 심사결과가 나온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는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총점을 기준으로 한다. <신설 2020. 9. 1.>

제5조 (게재여부결정)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되면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. <개정 2020. 9. 1.>

② 편집위원장은 심사평가서를 정리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, 편집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 이때 논문집필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0. 9. 1.>

③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편집위원회는 아래 표의 기준에 의해 ‘게재가능’ 또는 ‘게재가능(수정후바로)’ 또는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최종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3인의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, 심사의견의 내용과 논문의 역사적, 학문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9. 1.>

판정여부	심사위원1	심사위원2	심사위원3
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게재가능	게재가능	게재가능	게재가능
			게재가능(수정후바로)
게재가능 (수정후바로)	게재가능(수정후바로)	게재가능(수정후바로) 또는 게재가능	게재가능(수정후바로) 또는 수정 후 재심
	게재가능	게재가능	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
	게재가능	게재가능(수정후바로)	게재불가
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게재가능
			게재가능(수정후바로)
	게재가능(수정후바로) 또는 게재가능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
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
			게재가능
			게재가능(수정후바로)
			수정 후 재심
	게재불가	수정 후 재심	게재불가

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전자메일 등에 의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9. 1.>

제6조 (심사결과통보) ① 편집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게재여부결정을 심사의견의 내용을 첨부하여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의 통보를 할 때 심사의견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논문제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.

③ ‘수정 후 재심’으로 최종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제출자는 다음 호에 수정 후 투고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 투고자가 다음 호에 투고하지 않거나 재심사 후에도 게재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‘게재불가’로 처리한다. <신설 2020. 9. 1.>

제7조 (이의제기) ①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
<개정 2020. 9. 1.>

제8조 (비밀유지의무)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9. 1.>

제9조 (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) 편집위원회는 『高麗法學』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‘논문게재예정증명서’를 발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9. 1.>

제10조 (게재논문의 전자출판) 『高麗法學』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<신설 2020. 9. 1.>

제11조 (기타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<신설 2020. 9. 1.>

부 칙

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9.1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2월 4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제2조 (명칭변경) 이 규칙의 명칭을 ‘高麗法學’ 게재 논문 심사규정’에서 ‘高麗法學’ 게재 논문 심사규칙’으로 변경한다.

부 칙 <2021.8.16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규칙의 개정) 高麗法學 연구윤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첨 2의 내용 중 “‘高麗法學 게재 논문 심사규정’ 제4조 (심사판정과 이의제기)와 제7조 (비밀유지의무)”를 “‘高麗法學 게재 논문 심사규칙’ 제4조 (심사기준 및 방법)와 제7조 (이의제기) 및 제8조 (비밀유지의무)”로 한다.

〔별첨 1〕

高麗法學 제 호 게재예정논문 심사평가서

수신 :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(Tel:02-3290-2914, E-mail: lab004@korea.ac.kr)

발신 : 심사위원

I. 논문제목: _____

II. 게재결정기준에 관한 안내

-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.
 - 게재가능 : 100-80점
 - 게재가능(수정후바로) : 79-70점
 - 수정 후 재심 : 69-60점
 - 게재불가 : 59점 이하
- 고려법학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. 다만, 편집위원회는 '게재가능' 또는 '게재가능(수정후바로)' 또는 '수정 후 재심'으로 최종판정을 받은 논문 일지라도 3인의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순위, 심사의견의 내용과 논문의 역사적, 학문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심사위원께서는 게재가능 구간의 점수를 주시는 경우에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'오타자 교정사항의 지적이나 내용적 검토 및 권고사항 등에 관한 심사의견'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경우에도 논문필자에게 심사평가서가 전달되며, 논문필자는 심사평가서를 참고하여 스스로 투고논문을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.
- 게재불가의 심사평가서에 대해 논문필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평가서와 이의제기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.
- 'IV. 심사의견'은 제시된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II. 심사판정

항목 \ 평가	매우우수 (20점)	우수 (17점)	보통 (14점)	미흡 (11점)	매우미흡 (8점)
1.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					
2. 연구내용의 독창성					
3.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					
4.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					
5. 연구결과의 기여도					
총 점 (100점 만점)					
최종판정	게재가능 (100-80점)	게재가능(수정후바로) (79-70점)	수정 후 재심 (69-60점)	게재불가 (59점 이하)	

IV. 심사의견 (심사의견은 이 페이지를 넘겨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)

논문제목								
최종판정	게재가능 (100-80점)		게재가능 (수정후바로) (79-70점)		수정후재심 (69-60점)		게재불가 (59점 이하)	
심사의견 및 수정의견	1. 종합적 판단 (요점) 2. 오탈자의 교정사항 3. 논증의 흠결이나 오류 등 내용적 검토 사항 4. 논문필자와 심사평가자 사이의 (주제설정, 논증방식, 대안제시 등에 관한) 관점 차이에서 할 수 있는 권고 사항							

V. 심사위원

심사일	소속	성명	계좌정보 (은행명, 계좌번호) *고려대 소속의 경우 포털등록계좌 기재	주민등록번호 *본인계좌 여부 확인
		(인)		